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익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기관별 배치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
4. 연가사용, 수당 등 근무여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근무만족도 등 근무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위반, 불성실 근무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

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실태조사)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 현황</u> <u>2.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기관별 배치현황</u> <u>3. 공중방역수의사의 유연근무 등 근무형태</u> <u>4. 연가사용, 수당 등 근무여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u> <u>5. 근무만족도 등 근무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u> <u>6.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위반, 불성실 근무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u>
<u><신 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u>
<u><신 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u>
제2조(명단통보) 「<u>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	제2조(명단통보) <u>법</u> -----
<u><신 설></u>	부 칙 <u>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